# 비밀유지 협약서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이하 "SK 하이닉스"라 함)와 [㈜원익아이피에스] (이하 "협력사"라 함)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위 규정된 당사자가 [PE SiON, PE amoporous Si 공정]와 관련한 타당성 및 그 가능성을 조사•판단함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비밀 유지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제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정 의]

- (1)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PE SiON, PE amoporous Si 공정]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제반 기술 자료 및 기타 영업 관련 정보 그리고 일방 당사자의 Idea, Know-how 등으로서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 당사자를 정보 제공자라 하고 정보를 수령하는 타방 당사자를 정보 수령자라 한다.
- (2) 비밀정보는 구두, 서면, 도표, Tape, Diskette, 복사물, List, Model, Sketch, 설계도 기타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그 제공방법이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3) 다음과 같은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 정보 수령자가 충분한 증거로써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1) 본 협약에서의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없이 공공매체나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 2) 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 수령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미 획득한 정보





- 3) 정보 제공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공개를 승인한 정보
- 4) 비밀정보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획득하거나 개발한 정보

#### 제 3 조 [비밀의 표시]

- (1) 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를 문서, 서면 등의 유형으로 정보 수령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는 동 비밀정보에 "비밀", "대외비" 등의 표시로 비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정보 제공자가 정보 수령자에게 구두 등 무형의 방식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제공자는 제공 당시 동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명시하고 제공 후 30 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동 비밀정보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 4 조 [비밀 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취급]

- (1)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하여 정보 수령자는 동비밀정보의 누출 또는 부당한 공개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 수령자는 동비밀정보의 누출 또는 부당한 공개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내부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동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게할 수 있고, 동임직원에게 비밀유지를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 (2) 정보 제공자가 정보 수령자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 제공자의 소유이며, 정보 수령자는 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3) 본 협약이 중도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정보 수령자는 정보 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와 동 비밀정보의 모든 복사본 및 파생물을 정보 제공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 5 조 [비밀 유지 등 의무 기간]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협약을 통하여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한 정보 수령자의 비밀유지 의무 및 무단 사용 금지 기간은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5 년간으로

하며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의 경우에도 동 의무는 해당 기가 동안 존속한다.

#### 제 6 조 [기 타]

- (1)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 (2) 본 협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로써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3) 정보 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 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 (4) 정보 수령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정보 수령자 또는 그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밀정보의 부당한 공개 또는 누출로 정보 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8월 8일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대표이사 : 박성



주식회사 워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 변 정 우

